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한국산업은행

2. 조치일 : 2022. 7. 4.

3. 조치내용

조치대상	조치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1건, 개선사항 1건

※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관한 내규 및 전결기준 마련

□ 한국산업은행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'「금융실명법」'이라 함) 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, 제4조의2(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), 제4조의3(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·관리)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및 명의인 통보, 기록·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

동 업무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은행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, 「직무전결세칙」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, 기록·관리업무 등에 대한 직무 전결

사항을 정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시 실무담당자의 직상급자가 확인·결재하는 절차가 없어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한 「금융실명법」 위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,

○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, 명의인에 대한 제공 사실 통보, 제공내용의 기록·관리 업무 등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, 실무담당자의 업무처리 내용을 직상급자가 확인·결재하는 등 관련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필요

< 관련 규정 >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

나. 개선사항

(1)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내용 기록·관리 업무 개선

□ 한국산업은행은 「금융실명법」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내용 기록·관리 업무와 관련하여, 법원 등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 관련 요구서가 접수되면 실무담당자가 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책임자 승인 시 요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실무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제공의 법적 근거, 통보 유예 사유 등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·관리하고 있으나

이와 같이 실무담당자가 금융거래정보등 요구서 접수시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록·관리하여야 하는

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는 등 잘못 입력하는 경우 부정확하게 기록·관리*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

* 거래정보등 제공 요구의 법적 근거 등 「금융실명법」상 기록·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사례(▲▲건) 등

○ 「금융실명법」상 기록·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승인이 불가하도록 통제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

< 관련 규정 >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, 제4조의3